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8월 2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8. 31.) 상정 “보류” 의결

마. 재상정일자 :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9. 1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사업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사업지구 내 혼재되어 있는 행정동(신길4동, 신길6동)의 관할구역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힐스테이트 클래식)이 신길4동과 신길6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신길6동의 관할구역인 신길동 3474번지 외 440필지 35,401㎡를 신길4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2개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의 총 951필지, 93,728㎡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본 조례안의 ‘별표’ 규정 중 신길6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 경계조정 전 신길4동의 면적이  $0.35km^2$ , 인구는 8,887명이며, 신길6동의 면적  $0.68km^2$ , 인구는 18,005명으로 신길6동의 면적과 인구가 신길4동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여 동별 면적 및 인구편차의 불균형을 해소함이 바람직함.
- 또한, 위 사업이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입주 전에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앞서 주민들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58호
----------	-------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사업 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조정(별표)  
- 신길제4동과 신길제6동의 소재지 관할구역 조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다. 입법예고(2020. 8. 13. ~ 8. 23. / 10일간) 결과: 의견 있음

- 1) 조합측 신청(안)과 같이 신길6동으로 편입 요망
- 2) 차선책으로 기존의 신길4동과 신길6동 경계 유지
- 3) 조합원 입주 완료시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보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4동의 법정동 관할의“신길동 239번지1호 동북지역의”를 “신길동 3518번지에서 이면도로(신길로28길)를 따라 신길동 3183번지63호, 북동방향으로 3183번지288호, 동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95호, 북동방향으로”로 한다.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6동의 법정동 관할의“신길동 3514번지1호를”를 “신길동 3483번지를”로 하며,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43번지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을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001번지8호에서 서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34호, 남서방향으로 신길동 3193번지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부지역관할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부지역관할
신길 제3동	(생 략)	(생 략)		신길 제3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 제4동	(생 략)	(생 략)	신길동 221번지44호를 기점으로 하여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 239번지1호 동북지역의 신길동 4934번지를 경유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159번지58호 도신로에 연하여 기점까지의 지역	신길 제4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동 3518번지에서 이면도로(신길로 28길)를 따라 신길동 3183번지 63호, 북동방향으로 3183번지 288호, 동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95호, 북동방향으로
신길 제5동	(생 략)	(생 략)		신길 제5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 제6동	(생 략)	(생 략)	신길동 3514번지1호를 기점으로 신길로를 따라 시흥대로 만나는 지점에서 여의대방로를 따라 신길동 623번지에서 이면도로(여의대방로35길)를 따라 신길동 2350번지, 서쪽(신풍역)방향으로 2859번지, 신풍로7길 시점부터 종점까지, 종점에서 신길동 2013번지를 지나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43번지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길 제6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동 3483번지를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001번지8호에서 서쪽 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34호, 남서방향으로 신길동 3193번지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